

자유주의 국가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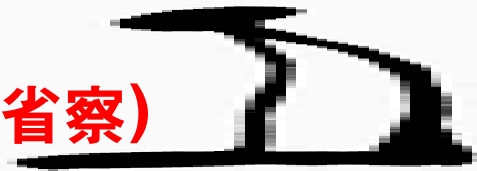
역사의 본질



어제보다 나은 **‘삶’**



성찰(省察)



시대의 변화란?
새로운 사상과 가치가 낡은 사상이나 가치를 대체 (지배적 이념의 교체)

역사의 본질



성찰(省察)



시대의 변화란?

새로운 사상과 가치가 낡은 사상이나 가치를 대체 (지배적 이념의 교체)

과거와 현재의 대화의 주체?

당시 사회와 오늘의 사회

오늘의 사회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미래 사회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의지 (**free will**)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

즐겁고, 평화롭고, 방해 받지 않는 행복한 삶 = **정당한 권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국가주의 국가론 충돌(자연스런 현상)

자유란 무엇인가?



自由란?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상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 가능

많은 다른 중요한 가치들은 정치적 자유가 주어졌을 때

충족될 수 있다.

새롭고 더 나은 생각이 발견되는 방식

어떤 것이 그

각자 개인 스스로가 가장 잘 판단 할 수 있다.

각자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 접근이 가능하다.

자유란 무엇인가?

행동, 생각을
제약 받지 않음
(전통적 개념)

나쁜 것, 싫은 것
으로부터 벗어남
(빈곤, 무지, 공포)

Freedom

개인의 당연한
사회적 권리
(언론, 종교, 직업 등)

Liberty

본질적 의미

개인의 자유

[개인주의 = 인본주의]

👉 자기중심주의 ↑, 윤리의식 약화

사회적 자유

[사회의 간섭 ≠ 구속]

👉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자유

자유란 무엇인가?

소극적 자유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나 구속, 타율적 강제를 받지 않는 상태로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바탕을 둬.

적극적 자유

인간의 자율적 의지, 결정을 바탕으로 한 선택권의 행사 및 자기 의사의 발표 기회가 허용되는 상태로 **국가에 의한 자유**에 바탕을 둬.

〈현대 복지 국가〉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바탕을 둔 **소극적 개념의 자유**를

국가에 의한 자유를 뜻하는 **적극적 자유의 개념으로 전환 시킴.**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조화시키기 위해 국가의 개입 필요)

국가주의 국가론 성찰

홉스의 “국가의 임무” 인정

전제군주제의 정당성 부정

[공동사회(국가)를 누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다른



사회계약은 어느 한 사람 또는 추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다수파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것.

국가권력은 국민의 동의(공포)되고 확립된 법률에 의거 통치되고,
외적 → 외부 침략 대응, 내적 → 법률의 집행에 만 행사

주권재민(主權在民)

법치주의(法治主義)

국가주의 국가론 성찰



홉스의 “국가의 의무” 인정

“자유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

【나라의 富 ≠ 국가의 富, 나라의 富 = 국민의 富】

국가의 의무

첫째,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과 침략으로 부터 그 사회를 보호

둘째,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으로 부터 보호

셋째, 공공재(公共財)* 건설 및 유지

*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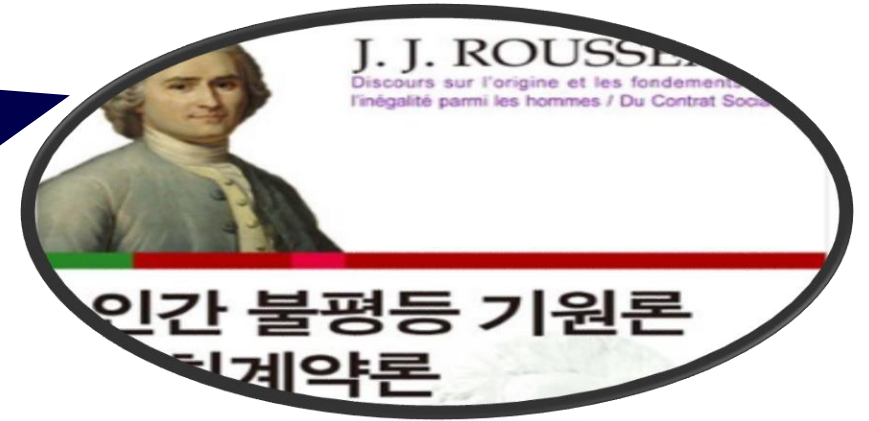
국가주의 국가론 성찰

“국가 ≠ 정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빼앗을 경우

국가의 해체/혁명 가능]

자유=인간의 본성



정부가 법치주의 위반 ⇒ 인민에게 정부를 해체 권리 有
(국민의 저항권, 불복종 투쟁이 정당)

정부가 법치주의 농단 ⇒ 사회계약 파기 ⇒ 시민 자연적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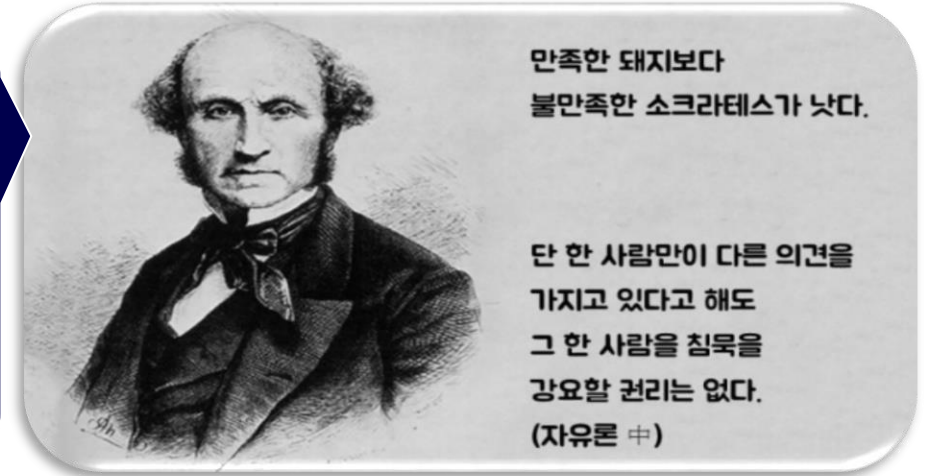
‘정부 ≠ 강제 권력 = 국가’ , 정부는 국가의 강제 권력을 실행하는 행정기구

국가주의 국가론 성찰

“침해할 수 없는 자유”

[공동사회=개인의 자유 제약 필요,
단, 국민 다수의 동의/확정된 법률]

☞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자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해악의 원리)이다.



자유 의 기본 영역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희망을 추구하는 자유

결사(結社)의 자유

개인은 공동체의 부속물이 아니고, 자기 삶의 주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타인도 사회도 그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제약해서는 안된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해악의 원리

단 한 사람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을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자유론 中)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 자기보호를 위해 불가피 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첫 번째, 타인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
만약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의
주장을 탄압한다면, 진리를 놓치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적인 진리가 있을 수도 있다. 특정한 주장이 1%의 오류도 없이 맞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의 주장에는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기 마련이다. 만약 특정
주장을 부분적인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탄압한다면 그 안에 있는 진리도 놓치는 것이다.

**세 번째, 틀린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을 통해서 왜 자신의 주장이 옳은지를
증명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주장이 있다. 우리는 그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왜 옳은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잘못된 주장을 그저 억누른다면, 자신의
주장이 왜 옳은지를 생각해볼 기회를 잃는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론



< 수용 >

국가의 임무가
범죄와 무질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 성찰 >

국가의 철학적 기반에서
주권자가 누구?
국가권력의 정당성 확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다른 책무?

자유주의 국가론

국가주의 국가론

국가의 유일한 목적 →
“생명, 안전, 재산을 지킨다”

국가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도 있다.

개인은 국가에 종속된 부속물에 불과

‘치안, 안보’ 유일한 가치

자유, 평등, 복지 등의 그 어떤 가치 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가치

유일한 가치를 위해 기타 가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약해야 한다.

자유주의 국가론

국가의 유일한 목적 →
“생명, 안전, 재산을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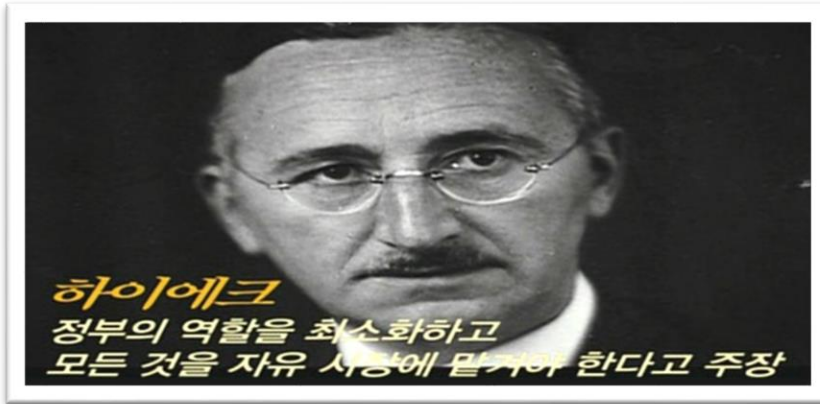
국가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도 있다(인정). 단, 그 범위를 엄격히 제한

개인이 국가에 우선하는 존재

국가권력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 설정

‘시장경제’, ‘대의민주주의’ 를
기본질서로 채택한 모든 국가 지배적 담론

자유주의 국가론(헌법적 가치)



국가권력 ≠ 무제한 권력
(red line 설정)

개인 > 국가
(자유주의 국가론)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됨**

그렇다면 **언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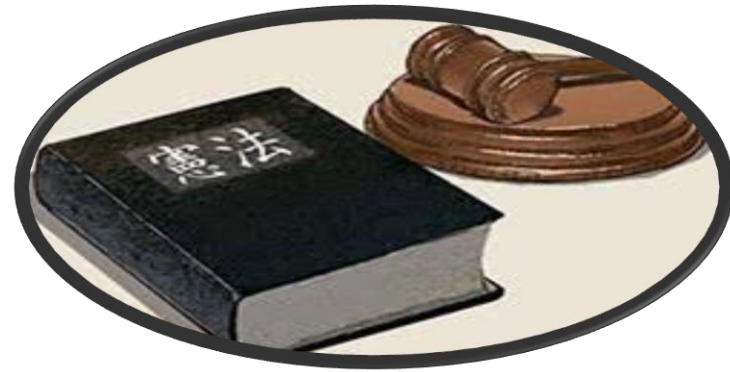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유주의 국가론(헌법적 가치)

개인의 자유, 행복 등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4~22조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자유주의 국가론(헌법적 가치)

인간은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의 구속을 받는 경우
뜻에 반해 다른 사람의 성지적인 권력에 복속될 수 없다. (자유의지)

타인과 결합을 통해 하나의 공동사회 형성에 동의
(외부의 침략 막고, 소유권 지킴 → 평화로운 삶 영위)

주권자(다수파) ≠ 군주

〈주권재민(主權在民)〉

국가권력은 국민의 안전, 공공의 복지 외에 사용 금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을 때 국가권력 정당성 확보, 법치주의)

明心寶鑑

한다"